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41
----------	-------

제출년월일 : 2011. 11.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1.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22조의 규정을 제11조 및 27조의 규정으로 개정(안 제1조)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로 개정 (안 제6조)
- 다. 동두천시청소년지도위원을 법 제22조의 규정에서 법 제27조의 규정으로 개정 (안 제2조제2호)
- 라. 위원장이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공무원 및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 (안 제11조)
- 마.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규정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삭제(안 제12조, 13조 14조, 15조)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조례”를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3조 및 제22조”를 “제11조 및 27조”로 하고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제13조”를 “제11조”로 하며 같은조제2호 중 “제22조”를 “제27조”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같은조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2장 장명을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삭제하고 2인을 “각 1인”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동두천시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5호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제1항 중 “회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한”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청소년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담당주사”를 “담당자”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중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사회복지과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사회복지과장 문 영 철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사회복지팀장 류 순 상
	담 당 자 성명 · 전화	주무관 박 수 웅 860-214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22조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및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1조 및 제27조-----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2.“동두천시지방청소년지도위원 (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3.“동두천시차세대위원회(이하”차세대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4.“청소년”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동두천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 ----- -----. -----이란 - 법 제27조----- ----- -----란----- -----이란----- -----
제2장 지방청소년위원회	제2장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두천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 ② ---부시장이----- -----

현행	개정안
③ <u>위원은 시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 행정기관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 ④ <u>공무원이 아닌 위원</u>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u>위원</u>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u>위원</u>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u>사</u> 실이 있는자 제5조(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의한다 1~ 4 (생략) 5. 기타 <u>위원장</u>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③ <u>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관련과장,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청소년업무관련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 1. <u>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u> 2. <u>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u> 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u>공무원이 아닌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u>위원</u>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삭 제> 제5조(운영) ----- ----- 1~ 4 (현행과 같음) 5. -- <u>시장</u>이-----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의 해촉) <u>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u> <u>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u> <u>촉할 수 있다</u> 1. <u>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u> 2. <u>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u> <u>이한 사</u> <u>유로 위원</u>의 <u>직무 수행이</u> <u>어려울 때</u> 3. <u>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u> <u>여 위</u> <u>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u> <u>인정 될 때</u> 제7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u>회무</u>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u>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에</u> <u>의한</u>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 ① <u>위원회는 위원</u> <u>장이 소집한다</u> ② (생략) 제9조(간사 등) ① (생략) ② 간사는 <u>문화체육과장</u>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 업무 <u>담당주사</u>가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u>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u> <u>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u> <u>해촉할 수 있다</u> 1. <u>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u> 2. <u>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u> <u>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u> <u>하기 어</u> <u>렵다고 판단될 경우.</u> 3. <u>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u> <u>수행하</u> <u>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u> <u>는 경우</u> 제7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 ----- 위원회 <u>업무</u>를 ----- ② 위원장이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u> <u>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u> ----- ----- ----- 제8조(회의 및 의사) ① <u>위원회 회의는 정기회</u> <u>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u> <u>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u> <u>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u> <u>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u>청소년업무 담당 주사</u>가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u>담당자</u>가 된다

현행	개정안
제11조(출석 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삭 제>
제12조(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설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삭 제>
제13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된 사람과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삭 제>
제14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기타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제14조 <삭 제>

현행	개정안
제15조(실무위원회의 간사)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담당으로 한다	제15조 <삭 제>
제16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다음 <u>각호의 1에</u>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의 추천과 자원 참여 신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4. (생략)	제16조(지도위원의 위촉) ----- <u>각호의 어느 하나에</u> ----- ----- ----- ----- ----- 1~4. (현행과 같음)
제17조(<u>지도위원의 결격사유</u>) 지도위원의 <u>결격사유</u> 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삭 제>
제18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생략) 1~4. (생략)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u>지득한</u>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위원의 임무) ①(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② ----- <u>알게 된</u> ----- ----- ----- -----